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55호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창원시 아동위원 협의회 외에 각 구별로 별도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한편, 아동위원의 증표를 신설하며, 조문순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임된 사항과 자치사무로 추진하는 협의회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명과 목적 규정에 이를 반영함(안 제명 및 안 제1조)

- 제명을 '창원시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아동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만 연임하는 것으로 조정함
(안 제2조)

다. 아동위원으로 구성된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 외에 각 구 관할 구역 아동위원으로 구성된 구 아동위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12조)

라. 아동위원임을 알 수 있는 증표를 별지 서식으로 신설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3,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1@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7
----------	-----

발의연월일 : 2023. 5. 26.

발 의 자 : 서명일·김경희·김남수·김묘정·김상현·김수혜
문순규·박선애·전홍표·홍용채 의원 (10명)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 외에 각 구별로 별도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한편, 아동위원의 증표를 신설하며, 조문순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임된 사항과 자치사무로 추진하는 협의회 규정 포함되어 있음

으므로 제명과 목적 규정에 이를 반영함(안 제명 및 안 제1조)

- 제명을 ‘창원시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아동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만 연임하는 것

으로 조정함(안 제2조)

- 다. 아동위원으로 구성된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 외에 각 구 관할 구역 아동위원으로 구성된 구 아동위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12조)
- 라. 아동위원임을 알 수 있는 증표를 별지 서식으로 신설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나. 현행 조례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창원시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동복지 증진과 아동위원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위원 위촉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아동의 권리보장과 아동복지의 증진을 위해 읍·면·동별로 창원시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2명씩 둔다. 이 경우 인구 1만명 이상인 읍·면·동은 1만명을 초과하는 5천명마다 1명의 아동위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아동위원으로 위촉한다.

1. 읍·면·동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에 관심과 열의가 있으며, 지역 아동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아동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 아동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아동위원의 임무)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창원시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및 아동 관련 사회복지기관·단체와 연계·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아동에 대한 생활 상태 및 가정 환경의 조사
2.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기초 상담·지도
3.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락체계 유지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아동위원의 준수사항) ① 아동위원은 임무를 수행할 때 아동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안 된다.

제5조(아동위원의 해촉)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아동위원 스스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아동위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아동위원이 제3조에 따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의 기회 제공, 수당 지급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복지의 증진 등 공적이 뚜렷한 아동위원에게 표창·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아동위원의 증표) 시장은 아동위원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별지 서식의 아동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아동위원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장 소속으로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를 두고, 구의 각 구청장 소속으로 구 아동위원협의회를 둔다.

②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 및 구 아동위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아동위원의 연간 활동 계획 수립 및 성과 분석

2. 아동위원의 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
4.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5. 아동관련 각종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7. 보호가 필요한 아동 결연·후원사업
8. 그 밖에 아동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 및 구 아동위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

가. 회장 1명, 부회장 5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한 아동위원

나.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호선하고, 부회장은 각 구 아동위원협의회의 회장이 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

2. 구 아동위원협의회

가. 회장 1명, 총무 1명을 포함한 각 구 관할 구역의 아동위원

나. 회장은 각 구 아동위원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

제9조(협의회 임원의 임기)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 및 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 부회장 및 총무(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사

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협의회 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회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회 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구 아동위원협의회회 경우에는 총무를 말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회 회의) ① 협의회회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협의회회 의결을 거쳐 그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위원회로 본다.

제3조(아동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아동위원회 대하여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4조(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위원회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위원회협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위원회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위원회협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 창원시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앞쪽)

제 호

아동위원증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창 원 시

54mm × 86mm [보존용지(1종) 120g/m²]

(뒤쪽)

아동위원증

성 명:
생년월일:
활동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창원시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아
동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장 직인

1.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
하지 못합니다.
2. 이 증표를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
에 넣어 주십시오.

■ 아동복지법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①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 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4조(아동위원) ①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창원시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구성) 창원시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각 읍·면·동별 2명으로 구성하되, 인구 1만 명 이상인 읍·면·동은 초과인구 5천 명당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
3.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
5.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위원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 하였을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5. 관할 읍·면·동에 공부상 및 실제 거주하지 않을 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부회장·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위원 활동 및 운영위원회 지원

2.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제반사항 연락과 통제

3.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사업

4.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5. 아동관련 각종 행사 지원

6.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7. 요보호아동 결연·후원사업

8. 그 밖에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지원

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아동위원증) 시장은 위원의 원활한 활동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아동위원 경비 지원) 시장은 위원이 제3조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위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